
장애인 등록 시 장애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

- 자폐성장애 -

2020. 01

본 자료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각종 서식을 재구성한 자료입니다. 장애인 등록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,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

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

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(소아정신건강의학과) 전문의

장애진단 시 필요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
자폐성 장애	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진단명, 장애의 상태,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, 지능지수, GAS 척도 점수(발달장애 평가척도) 등 진단소견 기재
	검사결과지	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, 자폐성척도(K-CARS 등)검사 결과지
	진료기록지	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(자폐적 성향, 태도,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) ※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
자폐성 장애 진단서 Tip	제 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(ICD-10)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인 경우, 전반성발달장애(자 폐증)가 확실해진 시점(최소 만2세 이상)에서 진단함	
<p><장애심사서류 완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· 면·동에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. ※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. ○ 검사결과지 :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※ 장애정도를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. ○ 진료기록지 :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, 보존기한 경과, 의료기관의 휴· 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		
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
진단 대상자	성명	성별	
	주민등록번호		
	주소 (전화번호:)		
장애 상태	장애유형		
	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		
	장애원인		
	장애 발생 시기		
진료기관 및 의사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	의료기관	의사	진료기간 . . . ~
진단의사의 소견	※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·검사결과·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		
재판정	필요사유	재판정할 시기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진단의사명
(의사 면허번호)
(전문의 자격번호)

(서명 또는 인)
(전문의 과목)

진단기관명

직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1.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2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.
3. 장애유형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.
4.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-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,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5.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